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5.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11월 12일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0. 12.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 집행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7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제9조)
-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영등포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공개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 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영등포문화재단, 장학재단)의 업무추진비까지 적용을 확대하였음.
 - 안 제7조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용내역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각 호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미 영등포구는 이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안에 의하여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까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확대 공개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영등포구 및 산하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구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며, 현재 영등포구는 홈페이지에서 매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고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74호
----------	-------

발의년월일: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다.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 집행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7조)
- 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제9조)
- 마.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0.11.13. ~ 11.17.):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동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

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내역 공개)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범위) ①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10조(교육·점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